

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349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: 2017. 5. 11.

제 출 자: 광진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정이유

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
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고 나아가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
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
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명칭
에 대하여 규정함 (안 제3조)
- 나.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수행 사업들에 대하여
규정함 (안 제4조)
 - 진로·진학 상담, 직업 체험 및 네트워크 구성 운영 등.
- 다. 운영 및 위탁 관리, 이용대상·시간, 지도·감독, 시설이용료 등에
대하여 규정함 (안 제5조 ~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교육기본법」, 「진로교육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합의사항 없음
- 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17. 3. 17. ~ 4. 6.) 결과 : 의견없음
- (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,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진로상담 및 일터 발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진로교육”이란 학생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,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, 진로정보 제공,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.
2. “직업체험”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,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·진로특강 등 학교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설치 및 명칭) ① 광진진로직업체험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서울특별시 광진구(이하 “광진구”라 한다) 관할 구역 안에 둔다.

② 센터의 명칭은 “광진진로직업체험센터”로 하되,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일터 자원 및 일터 멘토 관리
2.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
3.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(Hub) 역할
4. 진로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
5. 각급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
6. 적성, 진로·진학 상담,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

7. 진로·직업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
8. 지역 내 교육기관, 봉사단체,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·운영
9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

제5조(인력) ① 센터의 운영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.
2.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6조(운영 및 관리)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 이행 여부 등을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·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,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8조(이용대상)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광진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2.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9조(이용시간)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1. 평 일 09:00 ~ 18:00

2. 토요일 09:00 ~ 18:00

제10조(휴관)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이 정하는 공휴일
2. 자료의 정리·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·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
3. 제2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1조(이용료) 센터의 진로교육·직업체험 관련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- 서울특별시 광진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-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 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교육지원과 행정7급 정 다 운
연 락 처	02-450-7166

교육지원과장 김 정 애